

의안 번호	제3519호
----------	--------

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년 10월 7일 김포시장
- 나. 상 정 일 자 : 2024년 11월 4일
- 다. 의 결 일 자 : 2024년 11월 4일

2. 제안이유

- 부실채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‘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’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출연(출자)대상 : 신용보증기금
- 나. 출자·출연의 필요성
 - 외상대금 미수금 등 부실채권의 최대 80%까지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도모 및 연쇄도산 방지
- 다. 출자·출연 주요 사업내용
 - 사업기간 : 2025. 1월 ~ 12월
 - 사업대상 :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당기매출액 30억 미만 영세중소기업
 - 지원한도 : 업체당 최종 보험료의 70% 지원(최대 100만원)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여부를 연례적으로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상 출연 예정 금액이 대폭 증액('24년: 25,000천원→'25년: 50,000천원, 100% ↑)된 것이 확인됨. 외상대금 미수금 등 부실채권으로 인한 중소기업 연쇄도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출연하는 금액의 증액 필요성에 공감되는 사항으로 높은 비율로 증액이 이루어진 배경을 확인할 필요 있음.
- 다만, 출연 동의안에 첨부되는 '비용추계서'는 출연 결정에 대한 참고사항이며 실제 출연금액은 예산안 작성 단계(예산부서 협의 등)를 거쳐 확정되는 사항이기에 출연금액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제출될 예산안(2025년도 본예산안) 심사 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10. 주문사항 : 생략

11. 결과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